

1. 개정이유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되었고 상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구성 등의 세부지침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음

나. 실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안 제14조)

실시료의 감면·중과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7조에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은 직무발명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여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의 공무원 5인 이상으로 한다. 단, 기관 내에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의 공무원이 없을 시에는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직무발명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관련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7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제8조(실시권의 계약기간)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실시 시작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9조(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수익계약의 신청) 영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① 특허청장이 영 제13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을 받

으려는 자가 제2호부터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고유번호증(「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 해당한다)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
매실례가격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
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 이
용되는 비율
4. 기본율: 100분의3. 다만,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2 이상 100분의4 이하
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의 예정가격은 특허청장이 발명기관의 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
분을 받으려는 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
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

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4조(실시료의 감면, 중과 및 납부기간 연장) ① 실시권자가 영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료의 감면 또는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실시료 감면 또는 납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서 및 그 증빙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료를 감면하거나 중과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제4호의 기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감면 및 중과 유형에 따른 기본율의 조정률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료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시료 납부의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장하는 납부기간을 결정하되, 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결정 등의 사유로 연장할 때에는 법정 사유의 해소 시까지, 단순 자금 경색 등의 사유로 연장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 직무발명특허권을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